# 사단법인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회포상규정

## 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시설물의 진단과 안전성평가, 유지관리 및 보수\*보강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공헌한 자(단체포함)를 포상하기 위한 사단법인 한국구조물진단학회(이하 본학회라 함) 의 학회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종류) 학회상에는 다음의 5종을 둔다.

- ① 공로상
- ② 학술상
- ③ 기술상
- ④ 논문상
- ⑤ 특별상

제3조(수상자격) 수상자격자는 본학회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① 공로상 다년간 본학회의 발전이나 진단분야에 공헌한 공적이 탁월한 자
- ② 학술상 본 학회의 학술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, 저작 또는 발표를 하여 학술발전에 기여한 자
- ③ 기술상 본 학회의 기술 관련 분야에서 창의적 기술개발이나 D 질개선의 업적을 실현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한 자
- ④ 논문상 본 학회의 논문 관련분야의 우수한 논문을 저술, 발표하여 학술발전에 공헌한 자
- ⑤ 특별상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

## 제4조(수상후보자 추천)

- ① 본 학회는 매년 1회 본학회 발행지에 학회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요령을 공고한다.
- ② 학술상, 기술상 및 특별상 수상후보자는 본학회 정회원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추천한다.
- ③ 논문상수상후보자는 학회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회상 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.
- ④ 공로상은 학회상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다.

#### 제5조(심사서류)

-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서류는 다음과 같다.
  - ⑦ 추천사유서 1부
  - ④ 피추천자의 이력서 3부
  - 의 피추천자의 공적 및 업적 증빙서류 3부
- ② 필요한 경우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접수된 심사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

# 제6조(학회상 심사위원회)

-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와 제청을 위하여 학회상 심사위원회를 두며,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 내외로 구성한다.
- ② 심사위원은 매년 본 학회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위원장은 본학회 부회장중 1인이 담당한다.
- ③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.
- ④ 학회상의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
-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# 제7조(수상자결정)

- ① 학회상 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예정자는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수상자로 확정된다.
- ② 각부문의 수상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포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.

# 제8조(이중포상의 금지)

학회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.

## 제9조(시상)

- ① 학회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본학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.
- ② 학회상의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.

## 제10조(개정)

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